

Vol.1538



법원공보

2018. 2. 15. THU

법원행정처

● 목 차

규칙	3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1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7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
내규	26	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개정내규
예규	28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41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43	
인사	47	
공지사항	61	

● 규칙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2769호 2018. 1. 31.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 계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전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의 연구·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9조(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서는 심의안전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문위원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검토 및 그 결과 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운영지원단)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 및 전문위원 중에서 운영지원단원을 지명한다.

제14조(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70호 2018. 1. 31.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법정책총괄심 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1의4 및 1의5를 각각 별표 1의3 및 1의4로 하고,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국장 중에서”를 “실·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법정책실장”은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분장사무표

명칭		분장사무
사법정책 총괄심의관	사법정책 심의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2. 사법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결과의 관리 4. 외국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정보 수집 및 관리 5. 법조인력 양성, 수급 또는 활용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 수립 6. 사법부 인사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7. 여성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법 정책 및 제도 연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실·국과 및 그 분장 사무)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 ② (생략)
- ③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 신 설 >

⑤ ~ ⑩ (생략)

[별표 1의1] ~ [별표 1의2] (생략)

개정안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실·국과 및 그 분장 사무)

- ① -----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별표 1의4 -----
----- .
- ④ -----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윤리감사관, -----
----- .
- 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별표 1의1] ~ [별표 1의2]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분장사무
사법정책실장	사법정책총괄	1. 사법정책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책실장 업무의 보좌 2. 사법정책실 내 심의관들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 수행 3.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의 총괄 4. 사법지원실과 업무 협의 및 조정
	사법정책	1.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2. 사법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결과의 관리 4. 외국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정보 수집 및 관리 5. 법조인력 양성, 수급 또는 활용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 수립 6. 사법부 인사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7. 여성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법정책 및 제도 연구 8. 그 밖에 사법정책실장이 사법정책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별표 1의4] · [별표 1의5] (생략)

< 신설 >

[별표 1의6] ~ [별표 6의2] (생략)

개정안

< 삭제 >

[별표 1의3] · [별표 1의4] (현행 별표 1의 4 및 별표 1의5와 같음)

[별표 1의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분장사무표

명칭	분장사무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2. 사법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결과의 관리 4. 외국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정보 수집 및 관리 5. 법조인력 양성, 수급 또는 활용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 수립 6. 사법부 인사 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7. 여성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법정책 및 제도 연구

[별표 1의6] ~ [별표 6의2] (현행과 같음)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71호 2018. 1. 31.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 ④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u>
〈신설〉	④ <u>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u>
〈신설〉	⑤ <u>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u>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72호 2018. 1. 31. 공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19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 .

1. · 2. (현행과 같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 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
인 유동화전문회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73호 2018. 1. 31. 공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u></p>

◎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74호 2018. 1. 31. 공포)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청구”를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징계청구”를 “징계등 청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나 징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⑥ 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징계청구”를 “징계등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청구”를 “징계등 청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징계결정”을 “징계등 결정”으로, “행하며”를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로, “징계”를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결정서”를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징계”를 “징계등 처분”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를 “징계등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대법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5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 관 징 계 청 구 서

징계대상자	성명	()	소속		직위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사유	별지와 같음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됨(대상금액: 원) [] 해당 없음				
<p>위와 같이 징계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직 위 성 명 </p> <p>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제1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서

인 적 사 항	성명	()	소속		직위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결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 사유						
<p>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직위 성명 </p> <p>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징계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결정 주문			
이유			
<p>년 월 일</p> <p>법관징계위원회</p> <p style="text-align: right;">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징계청구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 징계청구서에 의한다.

② (생략)

③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분을 징계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개 정 안

제2조(징계청구등) ① ---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

② (현행과 같음)

③ -----

징계등 청구-----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징계부가금 청구) ① 법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 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 ③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형(벌금 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나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⑥ 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청구)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도서관장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결정서)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제8조(징계의 집행)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개 정 안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등 청구) -----

징계등 청구 -----

제7조(징계결정서) ① ----- 징계등 결정

----- 행하며, 징계부
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징계
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

----- 징계등 또는 징계부
가금 감면 -----

② ----- 징계결정서 -----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

제8조(징계등 처분의 집행) ① -----

----- 징계등 처분 -----

② 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
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
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의 납부고지
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
지 아니하면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징
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 ④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내 규

◎ 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92호 2018. 1. 26. 결재)

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를 말한다.</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내규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예 규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46호 2018. 2. 6. 결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1년으로”를 “2년 3개월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구 분	<input type="checkbox"/> 법원직원 <input type="checkbox"/> 대체직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직원 <input type="checkbox"/> 집행관			
*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사용자ID	(집행관의 경우 기재)	
* 코트넷 ID	@scourt.go.kr (단, 집행관의 경우 감독 공무원 ID 기재)			
*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폐지 (법원직원은 '나의인사' 화면 상단의 '인증서재발급' 메뉴로 직접 재발급 가능)			
	폐지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키 노출 <input type="checkbox"/>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위 양식에 기입된 E-mail 주소로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작성요령】

① 소속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한다.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② 사용자 ID : 집행관의 경우 기재한다.

③ 코트넷 ID : 등록기관에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송신 시 사용하는 코트넷 ID를 기재한다.(집행관의 경우 감독 공무원 코트넷 ID 기재)

[예] gdhong@scourt.go.kr

④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V’ 표시, 신청구분 항목 중 폐지를 선택한 경우 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V’ 를 표시한다.

- 개인키 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 인증서 재발급은 ‘나의인사’ 화면 상단의 ‘인증서재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직접 재발급 가능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요령】

① 구분

- 전자관인용 : 사법부의 기관 또는 부서단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활용하는 인증서
- 컴퓨터용 :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 장비(서버 등)에 활용하는 인증서
- 보안서버용(SSL) : 보안서버(웹서버) 구축 시에 사용하는 도메인 인증서

②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③ 인증서 활용업무 : 인증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응용업무를 기재

[예] 재판사무시스템 로그인, 재산조회시스템 데이터 암호/복호화용,
보안서버 설치용

④ 인증서관리담당 :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

⑤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V’ 표시하며 항목 중 재발급 또는 폐지를 선택한 경우 재발급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V’ 를 표시

- 개인키 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⑥ 컴퓨터용 시스템 정보

- 운영체제 : 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할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기재

[예] Solaris2.7, AIX4.3, Windows 98

- 서버명(IP 주소) : 컴퓨터용인 경우 인증서를 설치할 WEB/WAS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기재

[예] bjierm01 (172.16.18.16)

⑦ 보안서버용 시스템 정보

- 웹서버종류 : 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작성을 위한 웹서버 종류 기재

[예] apache 2.4.6, tomcat 1.2.5 등

- 도메인명 : 보안서버용에서 사용할 도메인명을 기재

[예] www.scourt.go.kr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다음과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소 속 :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까지 상세 기재)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코트넷 I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6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7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1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2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3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5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작성요령】

이 서식은 과단위 등으로 법원 행정전자서명을 단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아래한글 자료를 출력하여 신청자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개개인의 확인을 받는다.
(신청서로 활용)

해당 인증담당자에게 서명된 신청서, 공문과 함께 등록업무 수행기관에 제출한다.

①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한다.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② 코트넷 ID : 등록기관에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송신 시 사용하는 코트넷 ID를 기재한다.

[예] gdhong@scourt.go.kr

【작성요령】

- ① 소속(기관명)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하게 기재
 [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 ② 등록기관 담당자 :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
- ③ 등록대상
 - 등록기관이 관리할 해당 소속기관들과 관리대상인원수를 기재
 [예] 등록기관이 대구고등법원 관할인 경우 등록대상 대구고법, 대구지법 및 관할지
 원 등 1,500명
- ④ 신청구분 : 신청구분 항목을 선택하여 ‘V’ 표시하며 항목 중 재발급 또는 폐지를 선택한 경우 재발급폐지사유 항목을 선택하여 ‘V’ 를 표시
- 인증정보 노출 : 가입자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노출, 분실 등
 -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행정전자서명키가 저장매체 파손, 인증서 사용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행정전자서명키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업무 중지 : 조직개편 등 등록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 기타 사유를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32조(유효기간)

CCMA에서 발급하는 등록기관용, 기관용, 개인용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사용자ID			
이름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직급	
FAX번호			휴대폰
E-Mail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패키지		
	재발급, 패키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키 노출 비밀번호 분실	<input type="checkbox"/>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기타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E-mail을 통해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전자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불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개정안

제32조(유효기간)

2년 3개월로

[별지] 제2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행의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구분	<input type="checkbox"/> 법원직원 <input type="checkbox"/> 대체직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직원 <input type="checkbox"/> 집행관
* 소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사용자ID (집행관의 경우 기재)
* 코트넷 ID	@scourt.go.kr (단, 집행관의 경우 감독 공무원 ID 기재)
*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패키지 (법원직원 재발급은 '나의인사' 화면 상단의 '인증서재발급' 직접 신청)
	패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키 노출 비밀번호 분실 <input type="checkbox"/>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기타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위 양식에 기입된 E-mail 주소로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불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현행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전자관인용 컴퓨터용 보안서버용(SSL)

소속 (기관명)	(전화번호)		
인증서 활용업무			
인증서 관리담당	이름	(한글)	
		(영문)	직 급
	FAX 번호		휴대폰
	E-Mail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폐지		
	재발급, 폐지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키 노출 <input type="checkbox"/> 저장매체파손/분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용시스템	운영체제	* 예시 : Solaris2.7, AIX4.3, Windows 98	
	IP주소	* 예시 : 127.0.0.1	도메인명 (보안서버용)
사용환경	<input type="checkbox"/> 사법망 <input type="checkbox"/> 전용선 <input type="checkbox"/> Modem <input type="checkbox"/> 단독망 * Modem 사용자는 온라인 인증서발급신청이 불가능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E-mail을 통해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전자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불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개정안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전자관인용 <input type="checkbox"/> 컴퓨터용 <input type="checkbox"/> 보안서버용(SSL)		
* 소 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 인 증 서 활용업무			
* 인 증 서 관리담당	이름		휴대폰번호
	E-Mail	@scourt.go.kr	
*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폐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키 노출 <input type="checkbox"/> 저장매체파손/분 실(또는 비밀번호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컴퓨터용 시스템 정보	운영체제	(작성예시) : Solaris2.7, AIX4.3, Windows 98	
	서버명 (IP 주소)	(작성예시) : bjiem01 (192.168.0.1)	
보안서버용 시스템 정보	웹서버종류	(작성예시) : apache 2.4.6, tomcat	
	도메인명	(작성예시) : www.scourt.go.kr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참조번호, 인가코드는 위 양식에 기입된 E-mail 주소로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불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현 행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다음과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전자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 관 명 : 부서(과단위)까지 상세하게 기재 FAX번호:

■ 신청구분 : 신규 재발급 폐지 (사유:)

번호	이름	직급	주민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코트넷 ID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 정 안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다음과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화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괴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소 속 :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까지 상세 기재)

번호	이름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코트넷 I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5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6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7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8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9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0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1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2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3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4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5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공문서 붙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행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등록기관용)

담당자ID				패스워드			
담당자	이름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직급				
	FAX번호			휴대폰			
E-Mail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등록대상	등록대상기관			대상인원수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폐지						
	재발급·폐지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키 노출 <input type="checkbox"/> 저장매체파손/분실 (또는 비밀번호 분실) <input type="checkbox"/> 등록업무 중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등록시스템	시스템 IP			운영체제			
	등록S/W(버전)						
서비스개시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하며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등록기관용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불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개정안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등록기관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증서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록·발급 등을 위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소속	(기관명부터 과단위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등록기관 담당자	이름		휴대폰번호
	E-Mail	@scourt.go.kr	
*등록대상	등록대상기관		
	대상인원수		
*신청구분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폐지	
	재발급/폐지사유	<input type="checkbox"/> 인증정보 노출 <input type="checkbox"/> 저장매체파손/분실 (또는 비밀번호 분실) <input type="checkbox"/> 등록업무 중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등록기관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담당자 E-Mail 주소로 등록시스템 로그인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해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공문서 불임으로 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및 부서장 서명 또는 (인)은 생략 가능함

◎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47호 2018. 2. 6. 결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4. 나. 중 “54.0%”를 각각 “52.5%”로 하고, 같은 나.의 ○ 및 <참고: 조정지수 산정 방법> 중 “54.0%”를 각각 “52.5%”로, “0.7714...”를 각각 “0.75”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Ⅱ. 지급기준</p> <p>1. ~ 3. (생 략)</p> <p>4. 지급등급과 지급률</p> <p>가. (생 략)</p> <p>나. 지급기준액의 조정</p> <p>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첫 번째 성과상여금 <u>54.0%</u>, 두 번째 성과상여금 <u>54.0%</u>)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p> <p>※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p> <p>* 조정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4.0\%}{70\%} = 0.7714...$</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4.0\%}{70\%} = 0.7714...$</p>	<p>Ⅱ. 지급기준</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급등급과 지급률</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지급기준액의 조정</p> <p>-----</p> <p>-----</p> <p>----- <u>52.5%</u>, -----</p> <p>----- <u>52.5%</u>, -----</p> <p>-----</p> <p>-----</p> <p>※ -----</p> <p>-----</p> <p>* -----</p> <p>-----</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2.5\%}{70\%} = 0.75$</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2.5\%}{70\%} = 0.75$</p>
<p>〈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p> <p>① (생 략)</p> <p>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p> <p style="padding-left: 20px;">$\frac{\text{표준평균지급률}(54.0\%)}{\text{평균지급률}(70\%)} = 0.7714...$</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p> <p style="padding-left: 20px;">$\frac{\text{표준평균지급률}(54.0\%)}{\text{평균지급률}(70\%)} = 0.7714...$</p>	<p>〈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p> <p style="padding-left: 20px;">$\frac{\text{-----}(52.5\%)}{\text{-----}} = 0.75$</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p> <p style="padding-left: 20px;">$\frac{\text{-----}(52.5\%)}{\text{-----}} = 0.75$</p>

● 신법령 목록 (2018. 1. 16. ~ 1.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534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018. 01. 16	19175	5
법률제15343호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1534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5346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	"	16
법률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8
법률제15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1534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	20
법률제1535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1535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535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5353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1535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53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535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15358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1535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	62
법률제1536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15361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9
법률제1536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1
법률제153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4
법률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	"	76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581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01. 16	19175	76
대통령령제28582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285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2858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9
대통령령제2858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92
대통령령제28587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	"	130
대통령령제2858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6
대통령령제2858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6
대통령령제2859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01. 18	19177	4
대통령령제28592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859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859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2
대통령령제2859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8. 01. 22	19179	4
대통령령제28597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01. 23	19180	4
대통령령제28598호	육군중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59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86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60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86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86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60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60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60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8607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8608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86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01. 23	19180	14
대통령령제2861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01. 26	19183	5
대통령령제2861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613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61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01. 30	19185	4
대통령령제28615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61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61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618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28619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총리령】

총리령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16	19175	138
-----------	------------------------------	--------------	-------	-----

【부령】

교육부령제14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16	19175	143
환경부령제74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17	19176	4
환경부령제74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환경부령제74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환경부령제74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환경부령제7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토교통부령제48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9
행정안전부령제3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18	19177	60
국토교통부령제481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	72
국토교통부령제48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3

국토교통부령제48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2018. 01. 18	19177	91
국토교통부령제48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6
국방부령제947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22	19179	9
국방부령제948호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환경부령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국토교통부령제485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고용노동부령제21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24	19181	4
해양수산부령제274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25	19182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
국토교통부령제48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26	19183	7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7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행정안전부령제3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29	19184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해양수산부령제27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환경부령제74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고용노동부령제21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법무부령제917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일부개정령	2018. 01. 30	19185	14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호

2018. 1. 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사 명 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성균(洪性均)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8. 1. 15.자) 끝.

인사발령 법 제2호

2018. 1. 1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수(金旻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1. 12.부터 2018. 2. 25.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3호

2018. 1.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천(金壽天)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8. 1. 22.자) 끝.			

인사발령 법 제4호

2018. 1.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민영(李旻泳)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1. 27.자) 끝.			

인사발령 법 제6호

2018. 1. 25.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정무직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胡文赫)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8. 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7호

2018. 1. 25.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	안철상(安哲相)	법원행정처장에 포함
	"	김소영(金昭英)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함
			(2018. 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8호

2018. 1. 25.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원(河盛元)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2. 21.부터 2019.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오탈환(吳泰煥)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김순열(金淳烈)	"
나.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낙형(金洛亨)	2018. 2. 19.부터 2018. 2. 2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명주(宋明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2. 5.부터 2018. 6. 29.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은경(趙恩卿)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2. 1.부터 2019. 2. 15.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林兌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2. 22.부터 2019.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안민영(安敏英)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2. 20.부터 2019.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희정(朴熙精)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리지(崔리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8. 2. 24.부터 2019.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정(金洵廷)	2018. 2. 15.부터 2018. 3.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李珍姬)	2018. 2. 19.부터 2018. 2. 2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조인영(趙璘英)	"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성실(任成實)	2018. 2. 15.부터 2018.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효인(康曉仁)	2018. 2. 15.부터 2018. 2. 2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영희(姜英嬉)	2018. 2. 19.부터 2018. 2. 2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신봄메(申봄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南秀珍)	2018. 2. 18.부터 2018. 2. 2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승연(李承娟)	2018. 2. 15.부터 2018. 2. 2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현정(兪現淨)	2018. 2. 15.부터 2019. 2.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정승혜(鄭丞惠)	2018. 2. 20.부터 2019.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조혜수(曹慧秀)	2018. 2. 21.부터 2018. 2. 25.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화연(姜和延)	2018. 2. 20.부터 2019.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황정연(黃婷彦)	2018. 2. 20.부터 2019. 2.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송현(金松炫)	2018. 2. 15.부터 2018.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김윤희(金允姬)	2018. 2. 16.부터 2018.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응환(方雄煥)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	---

(2018. 2. 14.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미선(李美善)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형주(徐亨周)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욱진(崔旭鎭)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李振錫)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8. 2. 15.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석(金周石)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기철(全基喆)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8. 2. 18.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무(許京茂)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金相佑)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영(李憲榮)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8. 2. 19.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예지희(芮知希)	복직을 명함. 15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원종찬(元從燦)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철(李圭喆)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18. 2. 20.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중우(金鍾佑)	복직을 명함. 13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9.자)			

다.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지윤섭(池潤燮)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9.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라. 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지영(李知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5.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서현(鄭瑞賢)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0.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화진(李和珍)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1.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미화(朴美花)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낙희(玄洛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4.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현영(權賢英)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왕지훈(王知勳)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수정(徐水晶)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	장현석(張賢錫)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하림(李夏林)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경태(朱慶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가정법원 판사	송민화(宋民和)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구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권준범(權竣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연희(鄭筵熹)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5.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지영(金志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2018. 2. 16.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경은(柳敬恩)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7.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유랑(金유랑)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지수경(池洙庚)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송귀연(宋貴娟)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20.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임태연(林兌妍)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2018. 2. 22.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수연(金秀娟)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신영(朴信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	임성실(任成實)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현경(朴賢璟)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윤남현(尹男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지경(崔智景)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권소영(權素映)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장지혜(張智惠)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보현(金寶賢)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주영(朴主永)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송현(金松炫)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김윤희(金允姬)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24.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인형준(印亨竣)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	----------	--------------------------------------

(2018. 2. 25.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호

2018. 1. 2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정무직			
		강현중(姜玆中)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함

(2018. 2.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1호

2018. 1. 2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지방법원 판사			
		김상근(金湘根)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곽동우(郭東佑)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2. 1.자)

2. 교육명령**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상근(金湘根)	2018. 2. 1.부터 2018. 2. 23.까지 신 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곽동우(郭東佑)	2018. 2. 1.부터 2018. 2. 23.까지 신 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2호

2018. 1. 2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오영표(吳永杓)	2018. 2. 21.부터 2018. 6. 20.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한기수(韓基洙)	2018. 2. 21.부터 2018. 6. 20.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호

2018. 1. 2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기간 연장(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남혜영(南惠煥)	2018. 2. 20.부터 2018. 8. 19.까지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기간을 연장 함. 끝.

● 공지사항

◎ 1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1월분 법률도서(105책), 일반도서(51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46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천법학 v.10-4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기법조 v.24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변호사회	2017	
慶熙法學 v.52-4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7	
高麗法學 v.87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東亞法學 v.76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17	
明知法學 v.16-1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17	
법경제학연구 v.14-2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7	
법과 기업연구 v.7-2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과 기업연구 v.7-3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과 政策 v.23-2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7	
法과 政策 v.23-3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7	
법령해석사례집. 2017(상)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7	
법률 제명 약칭. 2017 / 한국.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17	
法學 v.58-3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59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7	
法學論叢 v.24-2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研究所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論叢 v.24-3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 法學研究所	2017	
法學論叢 v.34-4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7	
法學論叢 v.37-4 / 전남대학교, 法學研究所	全南大學校 法學研究所	2017	
法學研究 v.20-4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研究 v.28-3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忠南大學校 法學研究所	2017	
북한법령용어사전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7	
比較私法 v.78 / 한국비교사법학회	韓國比較私法學會	2017	
서울法學 v.25-2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17	
서울法學 v.25-3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17	
成均館法學 v.29-4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 比較法研究所	2017	
외법논집 v.41-4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이화젠더법학 v.9-3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統一과 法律 v.31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7	
통합 법제연구보고서, 2017년도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7	
漢陽法學 v.59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7	
衡平과 正義 v.32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2017	
홍익법학 v.18-4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7	
法と心理 v.17 / 法と心理學會	日本評論社	2017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Questionnaire & Answer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7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결과보고서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영, 영한)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 /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특허법원	2017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10-2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7	
經濟法研究 v.16-2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7	
經濟法研究 v.16-3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17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 고용노동부	진한엠앤비	2016	
기업법무 리뷰 v.10-2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7	
勞動法學 v.64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勞動法學會	2017	
노동정책연구 v.2017-4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7	
미디어와 인격권 v.3-2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7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 / 민주언론시민연합	두레	2017	
사회법연구 v.33 /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2017	
産業財産權 v.54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 産業財産權法學會	2017	
稅務와 會計 研究 v.6-3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조세연구소	2017	
언론과 법 v.16-3 /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7	
일감 부동산법학 v.15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7	
장애와 고용 v.27-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장애와 고용 v.27-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정보법학 v.21-3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18-2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7	
증권법연구 v.18-3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17	
지식재산연구 v.12-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창작과 권리 v.2017-4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7	
土地法學 v.33-2 / 한국토지법학회	韓國土地法學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環境法研究 v.39-3 / 한국환경법학회	韓國環境法學會	2017	
租稅研究 v.2017-11 / 日本租稅研究協會	日本租稅研究協會	2017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國際法學會論叢 v.62-4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7	
서울국제법연구 v.24-2 /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7	
중재연구 v.27-4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7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7	
(2017년) 언론법 연구회, 한국언론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언론법 연구회	언론법 연구회	2017	
選舉研究 v.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15 /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2017	
인권법평론 v.19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7	
입법과 정책 v.9-2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입법과 정책 v.9-3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2017	
憲法論叢 v.28 / 한국,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2017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52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7	
地方自治法研究 v.56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7	
행정소송사례집 v.38 / 한국. 법무부	法務部訟務課	2017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 Kopp, Ferdinand O	C.H.Beck	2017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矯正研究 v.77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7	
少年保護研究 v.30-2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17	
少年保護研究 v.30-3 /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2017	
연간보고서 v.2016 /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2017	
刑事政策研究 v.112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研究院	2017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비교회사법 총서. 11. 중국회사법 및 관련 법령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7	
선원법 해설 / 권창영	법문사	2018	
海事法研究 v.29-3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7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군사법원 판결요지집. 대법원·헌법재판소·고등군사법원 판결 / 한국.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2017	
독일 형사소송법 / 독일법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7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 변지영	사법정책연구원	2017	
법규집. 2017. 11. 01.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17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바른	법원행정처	2017	
사법 v.42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7	
재판실무편람. 제34호. 소액재판실무편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액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7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v.24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언론중재위원회	2017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v.25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언론중재위원회	2017	
채무자회생법 / 전대규	법문사	2018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소송법 / 김홍엽	박영사	2018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관계등록선례 요지집. 2017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영미 이혼절차 개설.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家族法研究 v.31-3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17	
民事法研究 v.25 / 호남민사법연구회	大韓民事法學會	2017	
부동산등기법. 2017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정영석	다솜출판사	2017	
재일동포 가족관계등록실무. 2017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7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58 / 金融財政事情研究會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7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情報管理學會誌 v.34-4 / 한국정보관리학회	韓國情報管理學會	2017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8-4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8-4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7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5~2045)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 인구총조사 기준 / 통계청	통계청	2017	
(2016) 건물신축단가표 / 김상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6	
(사례와 함께 배우는) 선물과 옵션 / 양철원	피앤씨미디어	2015	
(손에 잡히는) 파생상품시장. 선물. 옵션 투자지침서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KRX(한국거래소)	2017	
(알면 신나는) 파생상품 이야기 / 산업은행 금융공학실	KDB산업은행	2016	
(에센스) 선물옵션 / 감형규	유원북스	2016	
(이의경 교수의) 증권강의 / 이의경	신론사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監査論集 v.29 / 감사원	감사원	2017	
국가기술표준백서. 2016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2017	
國防研究 v.60-4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7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금리를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 박종연	원앤원북스	2016	
금융 선물. 옵션 / 김희호	청람	2015	
금융시장의 이해. 핀테크금융 · 인터넷전문은행의 이해 / 이요섭	연암사	2015	
기초 파생상품론 / 김희호	청람	2017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v.2017/6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	
선물과 옵션 / 이의경	명경사	2015	
선물과 옵션에 관한 작은 책 / 조승모	BKK	2017	
스왑 선물 채권 트레이딩 / 손석규	베이스스	2016	
아시아여성연구 v.56-2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2017	
여성연구 v.9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자본시장 이해 / 허화	탑북스	2017	
자본시장론 / 이한재	신영사	2017	
자본시장론 / 강인철	PNC(피앤씨미디어)	2015	
주택신축단가표 /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2017	
증권시장의 이해 / 백재승	명경사	2016	
지금 당장 주식투자에 선물옵션을 더하라. 선물옵션 초보자를 위한 입문에서 기초, 실전까지 핵심 파생상품 파헤치기 / 조범동	미래지식	2015	
채권 투자론. 질의응답 방식의 채권 입문서 / 유진	비즈프레스	2016	
채권이론과 활용 / 김형호	이팩스코리아	2017	
채권투자노트 / 김형호	이팩스코리아	2016	
코리아 아젠다. 서울대교수 21인이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비전 / 강태진	나눔	2018	
투자론과 파생금융상품 / 주상룡	울곡출판사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파생금융상품 / 감형규	유원북스	2015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 김운섭	한국금융연수원	2017	
파생상품론 / 박진우	명경사	2016	
한국의 증권시장 / 전양진	PNC(피앤씨미디어)	2017	
한국의 채권시장= 거래소 실무진들의 경험과 지식을 집약한 채권시장 안내서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지식과감성#	2015	
한국인사행정론 / 정일섭	운성사	2018	
한국자본시장론 / 김석진	三英社	2017	
韓國行政研究 v.26-4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研究院	2017	
行政論叢 v.55-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v.2017 / 한국,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17	
현대증권시장론 / 광철효	PNC(피앤씨미디어)	2016	

[예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열린법원 열린공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장품 2017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예술, 법원에 머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장 미술품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I 재료역학 / Goodno, Barry J	센게이지러닝코리아	2017	
보건복지백서 v.2016 / 한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	
재료역학 / Gere, James M	북스힐	2017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獨立有功者功勳錄. 第 23 卷. 2016 年度 褒賞者 / 한국. 국가보훈처	國家報勳處	2016	

• 법률학술잡지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창작과 권리 89호 (2017년 겨울호)	세창출판사	계간
2	環境法研究 제39권제3호	韓國環境法學會	연3회
3	海事法研究 29卷 3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
4	주간조선 No.2488	조선일보사	구간
5	주간조선 No.2489	조선일보사	주간
6	이코노미스트 No.141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7	이코노미스트 No.141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8	Legal Times Vol.114(2018. 1)	주)리걸타임즈	월간
9	시사저널 No.1471	(주)독립신문사	주간
10	시사저널 No.1472	(주)독립신문사	주간
11	거래가격 통권 564호(2018. 1)	대한건설협회	월간
12	地方自治法研究 17권 4호(통권 56호)	새로문화	반년간
1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8권 제4호 (2017. 12)	한국비블리아학회	연3회
14	노동법학 통권64호 (2017. 12)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5	産業財産權 第54號 54號(2006)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3회
16	정보관리학회지 제34권제4호(통권106호)(2017. 12)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17	國際法學會論叢 62卷 4號(通卷 147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권 4호 (2017.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계간
19	문학사상 2018년1월	문학사상사	월간
20	월간중앙 2018년 1월	중앙일보사	월간
21	주간조선 No.2490	조선일보사	주간
22	이코노미스트 No.141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23	이코노미스트 No.1417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4	시사저널 No.1473	(주)독립신문사	주간
25	법조 통권726호 + (별책)최신판례분석(2017. 12)	法曹協會	계간
26	司法行政 59권1호(통권 685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27	現代文學 2018년 1월	현대문학사	월간
28	속보삼일총서 통권 1451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9	속보삼일총서 통권 1452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30	속보삼일총서 통권 1453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31	주간조선 No.2491	조선일보사	주간
32	이코노미스트 No.141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33	시사저널 No.1474	(주)독립신문사	주간
34	신동아 2018년 2월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중앙 2018년 2월	중앙일보사	월간
36	종합물가정보 통권 567호 I, II호+부록 (2018년 2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7	헌법학연구 23卷 4號(2017. 12)	한국헌법학회	계간
38	刑事政策 29권 3호 (2017. 12)	한국형사정책학회	반년간
39	商事判例研究 30輯 4卷	商事判例研究會	계간
40	法과 政策研究 17집 4호 (통권 48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41	LAW & TECHNOLOGY 제13권제6호(2017. 11)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42	考試界 63권 1호(통권 731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日佛法學(19) Vol.29	日佛法學會	연간
2	法曹時報 69卷 11號	法曹會	월간
3	勞動判例 No.1165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4	(旬刊)商事法務 2150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2151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2152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7	ジュリスト 1513號	有斐閣	격주간
8	戶籍 946號	テイハン	월간
9	判例時報 2347號	判例時報社	순간
10	コピーライト Vol.57 No.680	著作権情報センタ	월간
11	發明 114卷 12號(2017.12)	發明協會	월간
12	法律のひろば 70卷 12號	ぎょうせい	월간
13	自治研究 93卷 12號 (通卷 1126號)	第一法規	월간
14	判例タイムズ 1441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15	損害保險研究 79卷 3號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계간
16	刑事法ジャーナル Vol.54(2018)	イウス出版	계간
17	登記研究 837號(2017. 11)	テイハン	월간
18	NBL 1111號	商事法務	반월간
19	民商法雜誌 153卷 5號	有斐閣	월간
20	(月刊)登記情報 57卷 12號 (673號)	テイハン	월간
21	金融・商事判例 No.1529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22	銀行法務 21 61卷14號(822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23	文藝春秋 2018年 1月號	文藝春秋	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24	法と心理 Vol.17 no.1(2017. 10)	法と心理學會	연간
25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1卷 3號(通卷 158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계간
26	租稅研究 第817號(2017. 11)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27	法學論叢 181卷 3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28	法學論叢 181卷 4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29	勞動判例 No.1166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30	法曹時報 69卷 12號	法曹會	월간
31	法學協會雜誌 134卷 11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32	勞動法律旬報 1900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33	勞動法律旬報 190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34	金融法務事情 2079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35	金融法務事情 2080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36	判例時報 2348號	判例時報社	순간
37	判例時報 2349號	判例時報社	순간
38	NBL 1112號	商事法務	반월간
39	(季刊)勞動法 259號	總合勞動研究所	계간
40	(旬刊)商事法務 2153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41	(旬刊)商事法務 (별책)商事法務 N.427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42	判例地方自治 426號(2017.12)	ぎょうせい	월간
43	金融・商事判例 No.1530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44	國際商事法務 45卷 12號(通卷 666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45	パテント 70卷 13號(通卷 826號)	日本弁理士會	격주간
46	アメリカ法 2017-1	東京大學法學部	반년간
47	稅法學 578 No.578(2017. 11)	日本稅法學會	반년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48	日本労働法學會誌 Vol.130	法律文化社	반년간
49	租稅研究 第818號(2017. 12) +별책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50	法學七ミナ- 63卷1號(通卷 756號)	日本評論社	월간
51	環境法研究 42號	有斐閣	연간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5 no.3	Univ. of California Press	계간
2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7, N.3(7 - 9)	dalloz	계간
3	Columbiajournaloflawandsocialproblems Vol.51No.1(2017 FALL)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계간
4	Lloyd'slawreports2017, Part.10	Lloyd's of London	연10회
5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6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6	Medical Law Review Vol.25 No.4	Oxford Journal	계간
7	(The)CambridgelawjournalVol.76 Part.3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8	Revuefrançaisededroitconstitutionnel N.112(2017, 12)	puf	계간
9	Kritische Justiz Jahrg.50 Hft.4	Nomos	계간
10	ZeitschriftFürRechtssoziologie Bd.37 Hft.2	Lucius & Lucius Verlagsges.mbh	반년간
11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and.181 Heft.6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격월간
12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Band 130 Heft.4	Carl Heymanns	계간
13	ZeitschriftfürSchweizerischesRecht Bd.136 Hft.5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14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3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1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2017, No.4	Dalloz	계간
16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4 (2017)	NCSC	연3회

No	서명	발간처	간기
17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Jahrgang.77 Heft.4	Kohlhammer	계간
1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2017, Nr.4	EDITIONS DALLOZ	계간
19	EuZW(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 28 Heft. 2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0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ang.34 Heft 2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2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Jahrgang. 70 Heft .48	C. H. Beck	주간
2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Jahrgang. 70 Heft. 49	C. H. Beck	주간
2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Jahrgang. 70 Heft. 50	C. H. Beck	주간
24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ang.95 Heft 12	Carl Heymanns	월간
25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ang. 125 Heft. 12	Gieseking	월간
26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ang.71 Heft 23	Otto Schmidt	반월간
2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ang.119 Nr.12	Wiley-VCH	월간
28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 34	Verlag C. H. Beck OHG	순간
29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 35	Verlag C. H. Beck OHG	순간
30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 36	Verlag C. H. Beck OHG	순간
31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ang 62. Heft 23	Verlag Dr. Otto Schmidt Köln	격주간
32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 57 Heft 12	C.H.Beck	월간
33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7 Heft. 12	C. H. Beck	월간
34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36	Juris-Classeur	주간
35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37	Juris-Classeur	주간
36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38	Juris-Classeur	주간
37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39	Juris-Classeur	주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38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40	Juris-Classeur	주간
39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41	Juris-Classeur	주간
40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42	Juris-Classeur	주간
4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9	dalloz	주간
4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40	dalloz	주간
43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41	dalloz	주간
44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42	dalloz	주간
45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4	BNA	주간
46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5	BNA	주간
47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6	BNA	주간
48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7	BNA	주간
49	Recueil Dalloz 2017, N.40	Dalloz	주간
50	Recueil Dalloz 2017, N.41	Dalloz	주간
51	Recueil Dalloz 2017, N.42	Dalloz	주간
52	Recueil Dalloz 2017, N.43	Dalloz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4	BNA	주간
54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5	BNA	주간
55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6	BNA	주간
5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7	BNA	주간
57	Le Droit Ouvrier N.833(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58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 /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59	Der Staat Bd.56 Hft.3	Duncker&Humblot	계간
60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 heft.21-23	N.P.Engel Verlag	반월간
61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 heft.24	N.P.Engel Verlag	반월간
62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N 06(281-328)	Manz	격월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63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N 6a(329-352)	Manz	격월간
64	Recht und Politik Jahrg. 53 Nr. 4	Berliner Wissenschafts- Verlag GmbH	계간
65	Rechtspfleger Studienhefte Jahrgang. 41 Heft. 6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월간
66	Recht der Arbeit Jahrgang. 70 Heft. 6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67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 23	C. H. Beck	월간
68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 24	C. H. Beck	월간
69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 9 Heft. 24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70	NJ Neue Justiz Jahrg. 71 Nr. 12	Nomos	월간
71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 12	Walter de Gruyter	월간
72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 38 Hft. 50	RWS	주간
73	BB(Betriebs-Berater) Jahrg. 72 Nr. 50	RWS	주간
74	BB(Betriebs-Berater) Jahrg. 72 Nr. 51	RWS	주간
75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 71 Nr. 49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76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 71 Nr. 50-52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77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 34 Hft. 2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78	Versicherungsrecht Jahrg. 68 Hft. 24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79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 132 Hft. 24	Carl Heymanns	반월간
80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 70 Heft. 24	Kohlhammer	반월간
81	Juristen Zeitung Jahrg. 72, Hft. 24	J. C. B. Mohr	반월간
82	La semaine juridique :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7, N. 46	Juris-Classeur	주간
83	The National Law Journal 2017년 12월	NLP IP Company	주간
84	Air and Space Law Vol. 42 No. 6	Kluwer	격월간
85	Law and human behavior Vol. 41 No. 6	Kluwer	격월간
86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7. Heft. 9	C. H. Beck	월간
87	Bundesgesetzblatt Teil I Nr. 76(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 mbH	주2회

No	서명	발간처	간기
88	Bundesgesetzblatt Teil I Nr.77(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89	Bundesgesetzblatt Teil I Nr.78(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90	Bundesgesetzblatt Teil I Nr.31(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91	Bundesgesetzblatt Teil I Nr.32(2017)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92	Ho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7, Nr.12	Stollfuss	월간
93	Der Spiegel 2017, Nr.51	Spiegel	주간
94	RW(Rechtswissenschaft) Jahrg.8 Hft.3	Nomos	계간
95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4	RWS Verlag	연5회
96	Europarecht Jahrg.52 Hft.6	Nomos	격월간
97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11)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98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103 (2017. 12)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9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8	BNA	주간
10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49	BNA	주간
101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8	BNA	주간
102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39	BNA	주간
103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40	BNA	주간
104	Der Spiegel 2017, Nr.52	Spiegel	주간
105	Time2017년12월18일	Time Asia	주간
106	Time2017년12월25일	Time Asia	주간
107	Time2018년1월15일	Time Asia	주간
108	Time 2018년 1월22일	Time Asia	주간
109	The Economist 2017. 12. 2.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0	The Economist 2017. 12. 9.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2017. 12. 1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2017. 12. 2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43	Juris-Classeur	주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14	Lasemainejuridique:éditiongénérale2017,N.44-45	Juris-Classeur	주간
115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46	Juris-Classeur	주간
116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7, N.47	Juris-Classeur	주간
117	sterreichischeJuristen-Zeitung Jahrgang.72 Heft.23	Manz	반월간
118	L'Actualité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Dalloz	주간
119	Recueil Dalloz 2017, N.44	Dalloz	주간
120	DroitSocial 2017, N.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	월간